

부천시 건강증진센터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6월 2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2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3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9년 7월 6일)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보건관리과장 종석목)

□ 폐지이유

- 건강증진센터의 위장조형 촬영기 및 유방단순 촬영기 폐기로 종합 정밀건강진단 등 질 저하와 민간의료기관의 건강진단업무 활성화로 인하여 건강증진센터를 유지할 필요성이 감소되고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(건강검진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‘검진기관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’(보건복지부고시 제2007-131호, 2007. 12. 27.)에 따라 건강검진 기관 지정이 취소(2009. 2. 10.)됨에 따라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“동 조례 폐지”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센터 폐지에 따른 위장조영촬영기 등 장비 및 남은 공간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?	○ 장비는 매각할 계획이며, 공간은 민원대기실로 활용하고 있음.
○ 센터 폐지에 따른 의사 등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?	○ 간호사는 일반진료실로 배치되고 의사는 한방진료 등으로 전환할 계획임.
○ 치과 등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 기능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 하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보건소기능 재정립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예방위주의 주민서비스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?	○ 신중히 검토하겠음. (이상 보건관리과장)

4. 토론요지

가. 반대토론 : 없음

나. 찬성토론 : 없음

5. 심사결과 : 『원안의결』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437호
의결 년월일	2009. 7. 10. (제153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6. 23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폐지이유

- 건강증진센터의 위장조형 촬영기 및 유방단순 촬영기 폐기로 종합 정밀건강진단 등 질 저하와 민간의료기관의 건강진단업무 활성화로 인하여 건강증진센터를 유지할 필요성이 감소되고,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(건강검진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‘검진기관의 인력·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기준’(보건복지부고시 제2007-131호, 2007. 12. 27.)에 따라 건강검진 기관 지정이 취소(2009. 2. 10.)됨에 따라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“동 조례 폐지”

□ 칙 부: 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

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현행 조례)

부천시건강증진센터설치조례

[1998. 04. 01 조례 제1573호]

[2001. 09. 29 조례 제1853호]

[2002. 08. 16 조례 제1892호]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천시건강증진센터(이하 "건강증진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위치) 건강증진센터는 부천시 소사구보건소내에 둔다.

제3조 (업무) 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.

1. 건강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
2. 종합정밀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
가. 개인건강진단
나. 단체건강진단
3. 부인과 진단에 관한 사항
4. 성인병 검진에 관한 사항

제4조 (수수료의 징수) ①건강증진센터가 행하는 각종 검사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한다.

②건강증진센터에서 행하는 「별표1」의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(재료비포함) 기준의 25퍼센트를 징수한다.다만, 국가암조기발견사업의 경우에는 동 사업지침에 의한 수가를 적용한다.

③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서 산정되지 아니한 보험비급여대상 검사수수료는 「별표2」와 같이 징수한다.

제5조 (수수료의 감면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.

1.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이상인 자
2. 부천시에 등록된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
3.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
4.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6조 (추징)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.

제7조 (운영) ①건강증진센터 관리·운영은 소사구보건소장이 한다.

②건강증진센터 운영요원은 전문가격을 갖춘 자 및 보조원으로 구성 운영한다.

제8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<1998. 4. 1 조례 제157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01. 9. 29 조례 제185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02. 8. 16 조례 제189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보험급여대상 감면 검사항목

검 사 항 목	비 고
위장조영 촬영(U.G.I) 유방암 촬영(MAMMO GRAPHY) 전산화단층촬영(C-T)	

[별표2]

보험비급여대상 검사수수료

(단위 : 원)

검사항목	기준	수수료	비고
초음파검사	1회	20,000	